

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[장인수 의원 대표발의]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정례회 회기와 임시회 소집 요구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 및 제4조제2항).
- 나. 정례회 회기 상한일을 50일에서 60일로 확대 조정함(안 제3조제1호).
- 다. 임시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함(안 제3조제2호)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2년 1월 6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자치법규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인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8-632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12월 30일

발의의원 : 장인수, 김영희, 김명철, 이상복,
성길용, 이성혁, 한은경 의원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정례회 회기와 임시회 소집 요구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 및 제4조제2항).
- 나. 정례회 회기 상한일을 50일에서 60일로 확대 조정함(안 제3조제1호).
- 다. 임시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함(안 제3조제2호).

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·제45조·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, 제54조, 제56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50일”을 “60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45조”를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<u>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·제45조·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3조(회기)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 등 서로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1.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, 그 회기는 합하여 <u>50일</u> 이내로 한다.</p> <p>2. 임시회의 회기는 <u>매회 15일</u> 이내로 한다.</p> <p>제4조(집회) ① (생략)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 <u>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, 제54조, 제56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조(회기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 <u>60일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2.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 때 <u>임시회의 회기는 15일</u> 이내로 한다.</p> <p>제4조(집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54조-----</p> <p>-----</p>

관계법령발췌서

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2.1.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, 전부개정]

제53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54조(임시회)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6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